

태왕디아너스 오페라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년 6월 30일]

태왕 THE 아너스 오페라

입주 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태왕THE아너스 오페라(www.thehonors-opera.com)의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위치 및 사업주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31507호(2021.06.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62-11번지 일원

자금관리 대리사무	시행사	시공사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별도)		
			주택건설 공사감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감리
코리아신탁(주) (110111-2937831)	(주)케이더블유개발 (170111-0713611)	(주)태왕이앤씨 (170111-0412495)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2,489,806,000	(주)진전기엔지니어링 654,235,600	서한건설(주) 731,500,000

2. 공급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1순위 해당지역 (대구 6개월 이상 거주자)	1순위 기타지역 (대구 6개월 미만 / 경북 거주자)	2순위			
일정	2021년 07월 12일(월)	2021년 07월 13일(화)	2021년 07월 14일(수)	2021년 07월 15일(목)	2021년 07월 21일(수)	2021년 07월 23일(금) ~ 2021년 07월 29일(목)	2021년 08월 02일(월) ~ 2021년 08월 04일(수)
방법	청약Home 인터넷 청약(08:00~17:30) 사업주체 건물주택 (10:00~14:00)	청약Home 인터넷 청약 (08:00~17:30) (PC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개별 조회 (청약Home 인터넷)	태왕THE아너스 오페라 건물주택 방문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건물주택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119-8)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주택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119-8) 	

3. 공급규모 및 공급금액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9층 총 5개동 중 아파트 4개동 5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33세대(일반기관추천) 44세대, 다자녀가구 53세대, 신혼부부 89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31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482	01	84.8822A	84A	84.8822	30.9464	115.8286	51.5385	167.3671	15.7221	268	27	27	53	8	19	134	134	6
		02	84.8234B	84B	84.8234	32.4035	117.2269	51.5028	168.7297	15.7112	178	17	18	36	5	12	88	90	4
		03	121.8288	121	121.8288	43.2341	165.0629	73.9717	239.0346	22.5654	86	0	8	0	3	0	11	75	2
		합계										532	44	53	89	16	31	233	299

※ 평형 환산 방법: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타입 (약식표기)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계약시	2022-04-18	2022-11-18	2023-06-18	2024-01-18	2024-08-18		2025-01-18	입주지정일
84A	4	6	216,693,000	326,807,000	-	543,50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163,050,000
	5	6	217,929,000	328,671,000	-	546,600,000	54,660,000	54,660,000	54,660,000	54,660,000	54,660,000	54,660,000	54,660,000	54,660,000	54,660,000	163,980,000
	6	6	219,126,000	330,474,000	-	549,600,000	54,960,000	54,960,000	54,960,000	54,960,000	54,960,000	54,960,000	54,960,000	54,960,000	54,960,000	164,880,000
	7	6	220,322,000	332,278,000	-	552,60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165,780,000
	8	6	221,518,000	334,082,000	-	555,600,000	55,560,000	55,560,000	55,560,000	55,560,000	55,560,000	55,560,000	55,560,000	55,560,000	55,560,000	166,680,000
	9	6	222,714,000	335,886,000	-	558,600,000	55,860,000	55,860,000	55,860,000	55,860,000	55,860,000	55,860,000	55,860,000	55,860,000	55,860,000	167,580,000
	10	6	223,910,000	337,690,000	-	561,60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168,480,000
	11~20	60	225,106,000	339,494,000	-	564,60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169,380,000
	21~30	54	226,302,000	341,298,000	-	567,600,000	56,760,000	56,760,000	56,760,000	56,760,000	56,760,000	56,760,000	56,760,000	56,760,000	56,760,000	170,280,000
	31~40	60	228,335,000	344,365,000	-	572,70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171,810,000
	41~49	52	230,369,000	347,431,000	-	577,800,000	57,780,000	57,780,000	57,780,000	57,780,000	57,780,000	57,780,000	57,780,000	57,780,000	57,780,000	173,340,000
84B	4	4	212,427,000	320,373,000	-	532,80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159,840,000
	5	4	213,623,000	322,177,000	-	535,80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160,740,000
	6	4	214,820,000	323,980,000	-	538,800,000	53,880,000	53,880,000	53,880,000	53,880,000	53,880,000	53,880,000	53,880,000	53,880,000	53,880,000	161,640,000
	7	4	216,016,000	325,784,000	-	541,800,000	54,180,000	54,180,000	54,180,000	54,180,000	54,180,000	54,180,000	54,180,000	54,180,000	54,180,000	162,540,000
	8	4	217,212,000	327,588,000	-	544,80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163,440,000
	9	4	218,408,000	329,392,000	-	547,80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164,340,000
	10	4	219,604,000	331,196,000	-	550,80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165,240,000
	11~20	40	220,800,000	333,000,000	-	553,800,000	55,380,000	55,380,000	55,380,000	55,380,000	55,380,000	55,380,000	55,380,000	55,380,000	55,380,000	166,140,000
	21~30	36	221,996,000	334,804,000	-	556,80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167,040,000
	31~40	40	224,030,000	337,870,000	-	561,900,000	56,190,000	56,190,000	56,190,000	56,190,000	56,190,000	56,190,000	56,190,000	56,190,000	56,190,000	168,570,000
	41~49	34	226,063,000	340,937,000	-	567,0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70,100,000
121	4	2	292,990,000	438,100,000	43,810,000	774,90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232,470,000
	5	2	294,124,000	439,796,364	43,979,636	777,900,000	77,790,000	77,790,000	77,790,000	77,790,000	77,790,000	77,790,000	77,790,000	77,790,000	77,790,000	233,370,000
	6	2	295,258,000	441,492,727	44,149,273	780,900,000	78,090,000	78,090,000	78,090,000	78,090,000	78,090,000	78,090,000	78,090,000	78,090,000	78,090,000	234,270,000
	7	2	296,393,000	443,188,182	44,318,182	783,90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235,170,000
	8	2	297,527,000	444,884,545	44,488,455	786,900,000	78,690,000	78,690,000	78,690,000	78,690,000	78,690,000	78,690,000	78,690,000	78,690,000	78,690,000	236,070,000
	9	2	298,661,000	446,580,909	44,658,091	789,900,000	78,990,000	78,990,000	78,990,000	78,990,000	78,990,000	78,990,000	78,990,000	78,990,000	78,990,000	236,970,000
	10	2	299,795,000	448,277,273	44,827,273	792,900,000	79,290,000	79,290,000	79,290,000	79,290,000	79,290,000	79,290,000	79,290,000	79,290,000	79,290,000	237,870,000
	11~20	20	300,930,000	449,972,727	44,997,273	795,900,000	79,590,000	79,590,000	79,590,000	79,590,000	79,590,000	79,590,000	79,590,000	79,590,000	79,590,000	238,770,000
	21~30	18	302,064,000	451,669,091	45,166,909	798,900,000	79,890,000	79,890,000	79,890,000	79,890,000	79,890,000	79,890,000	79,890,000	79,890,000	79,890,000	239,670,000
	31~40	20	303,992,000	454,552,727	45,455,273	804,000,000	80,400,000	80,400,000	80,400,000	80,400,000	80,400,000	80,400,000	80,400,000	80,400,000	80,400,000	241,200,000
	41~47	14	305,883,000	457,379,091	45,737,909	809,0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242,700,000

4. 신청자격(공급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필히 입주자 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러 '수도권 및 투가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대상(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